

인천지방법원 2024. 12. 11 선고 2024가단22053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1. 13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1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1,074,879원 및 그중 37,322,733원에 대하여 2024. 8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2024. 8. 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피고는 2023. 4. 20. 주식회사 D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, 2023. 12.경 사임한 사람이다.

○ 원고는 2023. 7. 5. 소외 회사에 G80 2.5T 차량을 장기렌트하는 계약(이하 ‘이 사건 렌트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면서, 월 납부금은 1,163,250원, 대여기간은 60개월로 정하였다.

○ 이 사건 렌트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신청서류(이하 ‘이 사건 계약신청서’라 한다)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성명 및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(전화번호 1 생략)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.

○ 원고는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하였는데, 당시 차량을 인도하면서 작성된 ‘차량인도 확인서’(이하 ‘이 사건 인도확인서’라 한다)에는 인수자로서 피고의 자필 서명이 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3, 11, 1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월 납부액을 연체하여 이 사건 렌트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,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가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임대료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자필 부분과 이 사건 인도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, 위 자필 및 서명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갑 제10, 12, 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, 원고는 이 사건 계약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이 사건 렌트계약 체결 당시 피고 본인 확인을 하고, 월 납부액 연체 등에 관한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본인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한 사람이 피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피고는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 명의로 개통되었으나 소외 회사측의 요청으로 건네주어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, 나아가 피고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렌트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것과 관련하여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).

결국 피고가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,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상훈